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1년 3월 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빙그레  
대 표 이 사 :       이 건 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44-3  
                  (전 화)02-2022-6000  
                  (홈페이지)<http://www.bi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담당 전무이사       (성 명)전 창 원  
                  (전 화)02-2022-6261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5기 정기)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11-1 (주)빙그레(도농공장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5기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선임 : 박영준, 전창원, 김태영 후보)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선임 : 이남현 후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 함
-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②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의 찬반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아래 양식에 기재하여 송부하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활한 주총 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전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 의사표시 송부처 : 150-88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 팩스번호 : 02-3774-3244~5
- 송부시한 : 2011년 3월 11일(주주총회 5일전)

-----절취선-----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1년 3월 1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빙그레 제45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인(사업자)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2011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주소

주식회사 빙그레

대표이사 이 건 영(직인생략)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연 (출석률: 100%)	이상운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01월 13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에 따른 부여방법 결정의 건	찬성	찬성
2	01월 26일	산업/하나은행 수입거래약정 만기연장의 건	찬성	찬성
3	01월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말운영평과 결과보고의 건	참석	참석
4	02월 04일	재무제표 승인건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02월 24일	제4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의 건	찬성 참석	찬성 참석
6	03월 19일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7	04월 16일	기업 구매카드 이용 약정연장의 건	찬성	찬성
8	05월 14일	여신만기 연장의건 단기금융 한도약정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06월 17일	축산발전기금 대출 약정의 건	찬성	찬성
10	10월 07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의 건	찬성	찬성
11	10월 14일	수입거래약정 연장의 건	찬성	찬성
12	10월 18일	일괄여신한도거래 약정의 건	찬성	찬성
13	10월 29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에 따른 부여방법 결정의 건	찬성	찬성
14	12월 22일	재단법인 설립 및 출연의 건	찬성	찬성
15	12월 30일	축산발전기금 대출 약정의 건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명	3,500,000,000	70,400,000	35,200,000	

※ 주총승인금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체의 보수로 승인된 금액이며 지급총액은 2010.1~2010.12 기준임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엔겔계수의 소득대비 체감의 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에 저탄력적인 식품산업은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식품의 안정성이 주요 Issue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정성을 확보한 고품질의 식품공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고기능성 식품의 Needs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제품 등 건강지향 기능성 식품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일반적으로 식품산업은 대외부문의 여건변화 즉 국제 농수축산물의 작황, 환율변동, 고유가, 관세정책, 식품위생 규제 등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식품산업의 특성상 경제의 기반이 되는 각종 유관산업에 미치는 커다란 파급효과로 인해 다른 제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입니다. 또한 유가공 산업은 계절적으로 수급의 차이가 발생하나 최근 생활 Pattern 등의 변화로 성,비수기 차가 축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부문의 매출은 계절적 수요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 (4) 경쟁요소

당사의 부문별 경쟁의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경쟁형태	주경쟁자	진입난이도	경쟁요인
아이스크림	과 점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	시장지배적	영업조직 광고, 품질
우 유	자유경쟁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원재료확보	기업이미지 품질
농후발효유	자유경쟁	남양유업 매일유업	원재료확보	품질, 광고

### (5) 자금조달의 특성

당사의 양호한 현금흐름은 당사가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나 자본시장에서의 추가적 조달 없이 신규사업 및 생산설비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한편 당사의 2010년말 현재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 의존도는 1.87%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당사는 식품위생, 축산물가공처리, 환경안전 및 공정거래법 규정상의 규제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불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소비 심리의 위축 등 내수시장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사의 도전 등 경제 내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품질 정책과 고객 서비스의 지속적인 신뢰 확보 노력을 통해 제품의 수준을 높이고 아카펠라, 골레도르 등 차별화된 신제품으로 내수 사업의 역량을 공고히 하였으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루트의 다변화 추진으로 브라질에서는 메로나 열풍이 일어나는 등 지속적인 매출신장 달성을 통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2) 시장점유율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우 당사를 포함하여 롯데삼강,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4개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우유시장은 당사외에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의 주요 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은 공인된 자료가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3) 시장의 특성

아이스크림의 주된 목표 시장은 어린이 및 Teen-age이며, 상위 4개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능성 제품 등의 수요 확산과 더불어 수요층의 다계층화 추세에 있습니다.

우유 및 발효유 시장은 건강식품 인식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적 수요 및 경쟁구도 또한 매우 안정적이며 카테고리에 따라 Target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는 흰우유와 가공유 및 발효유로 나뉘어집니다.

발효유 부문은 외국기술 제휴에 의한 도입제품으로 80~90년대 이래 고도성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제품 다양화, 시장 세분화의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의식 고조로 기능성 제품개발의 다양성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상 요구르트의 경우는 경쟁사 및 신규집입자의 지속적 마케팅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장 Leading 기업인 당사에게는 매출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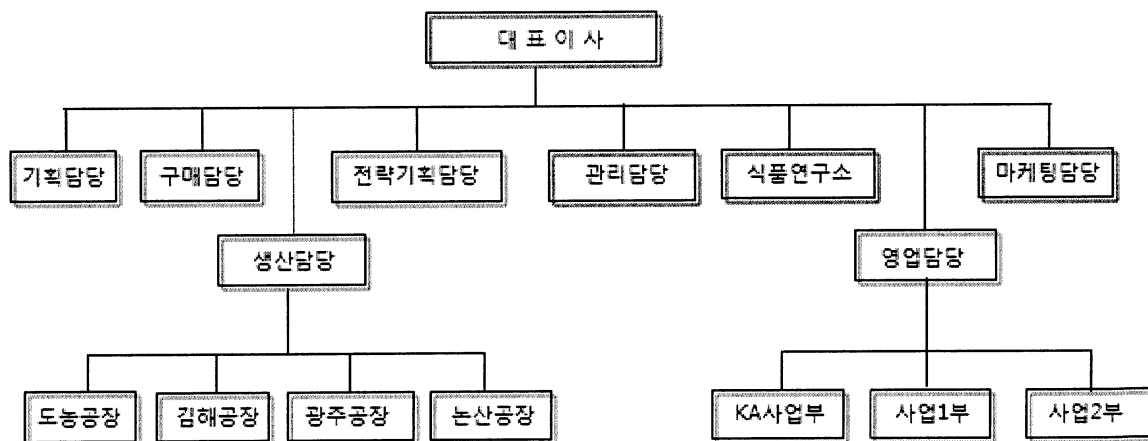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당사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2008년 일본 X-vinn사와의 제휴를 통해 실버층 대상 식사 배달사업에 진출하여 실버산업의 주춧돌을 마련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한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세계적인 석류 생산 가공업체인 미국 POM WONDERFUL, LLC. 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건강 관련 신규 사업영역도 확장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신규 사업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요한 사업영역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추가적 매출 창출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45기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참조

####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무상태표)>

제 45 기 2010. 12. 31 현재

제 44 기 2009.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45 기	제 44 기
자산		
Ⅰ. 유동자산	250,487,162,101	207,230,588,083
(1) 당좌자산	228,443,034,034	185,522,412,303
(2) 재고자산	22,044,128,067	21,708,175,780
Ⅱ. 비유동자산	224,177,628,216	214,261,021,087
(1) 투자자산	22,238,376,048	16,755,775,006
(2) 유형자산	185,948,197,576	181,589,733,424
(3) 무형자산	710,781,824	696,646,378
(4) 기타비유동자산	15,280,272,768	15,218,866,279
자산총계	474,664,790,317	421,491,609,170
부채		
Ⅰ. 유동부채	76,062,331,901	70,472,358,316
Ⅱ. 비유동부채	24,816,810,635	21,342,960,114
부채총계	100,879,142,536	91,815,318,430
자본		
Ⅰ. 자본금	49,756,205,000	49,756,205,000
Ⅱ. 자본잉여금	64,768,908,197	64,111,749,116

과 목	제 45 기	제 44 기
III. 자본조정	-22,257,203,115	-24,087,882,28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779,156,394	660,186,834
V. 이익잉여금	276,738,581,305	239,236,032,070
자본총계	373,785,647,781	329,676,290,740
부채와자본총계	474,664,790,317	421,491,609,170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45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제 44 기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5 기	제 44 기
I. 매출액	684,900,709,105	628,592,140,687
II. 매출원가	466,616,585,387	428,069,077,327
III. 매출총이익	218,284,123,718	200,523,063,360
IV. 판매비와관리비	155,055,229,528	139,974,194,786
V. 영업이익	63,228,894,190	60,548,868,574
VI. 영업외수익	6,950,164,373	8,390,357,259
VII. 영업외비용	6,568,921,517	5,815,622,230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3,610,137,046	63,123,603,603
IX. 법인세비용	14,704,974,511	14,334,731,629
X. 당기순이익	48,905,162,535	48,788,871,97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45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제 44 기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5 기	제 44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53,748,005,340	53,195,456,10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842,842,805	4,406,584,131
2. 당기순이익	48,905,162,535	48,788,871,974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0	1,200,000,000
1. 기술개발준비금	0	1,200,000,000
합계	53,748,005,340	54,395,456,105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49,618,521,400	49,552,613,300
1. 이익준비금	1,240,000,000	1,150,000,000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	4,000,000,000	3,000,000,000
3. 기업합리화적립금	7,000,000,000	8,000,000,000
4. 해외시장개척적립금	10,000,000,000	11,000,000,000
5. 시설투자적립금	15,000,000,000	15,000,000,000
6. 배당금	12,378,521,400	11,402,613,3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129,483,940	4,842,842,80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연간배당내역	제 45 기	제 44 기
가. 주당 연간배당금(원)	1,400	1,300
나. 시가배당율(%)	2.5	2.5
다. 배당총금액(원)	12,378,521,400	11,402,613,300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 특별 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bing.co.kr">http://www.bing.co.kr</a> )에 게재한다. 다만 전자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전자공고방법 도입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생략)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 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 4.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 5~7. (생략) 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의 규정에서 정하는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 증서(DR) 발행에 따라 ..... 5~7. (현행과 동일)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 근거법령 변경내용 반영 (증권거래법 폐지 반영)
제9조의 2 (일반공모증자등)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등은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 ....신주의 발행 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5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일반공모증자등) ① 본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의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등은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 ....신주의 발행 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변경내용 반영 (증권거래법 폐지 반영)
제9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100의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제9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 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100의	- 근거법령 변경내용 반영 (증권거래법 폐지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3/100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p> <p>③~④ (생략)</p> <p>⑤ (생략)</p> <p>1. (생략)</p> <p>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p> <p>나. (생략)</p> <p>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p> <p>⑥ ~⑦ (생략)</p>	<p>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3/100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p> <p>1. _____ (삭 제)</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2. _____ (삭 제)</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3. _____ (삭 제)</p> <p>_____</p> <p>③~④ (현행과 동일)</p> <p>⑤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나. (현행과 동일)</p> <p>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⑥ ~⑦ (현행과 동일)</p>	<p>- 상법 및 시행령에 부여대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관에 간략히 규정</p>
<p>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③ (생략)</p> <p>④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③ (현행과 동일)</p> <p>④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 근거법령 변경내용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반영</p>
<p>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생략)</p> <p>② ..... 1/100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전에 ..... .....</p> <p>한국경제신문과 경향신문에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제2항 및</p>	<p>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현행과 동일)</p> <p>② ..... 1/100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전에 ..... .....</p> <p>한국경제신문과 경향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_____ (삭 제)</p> <p>_____</p> <p>_____</p> <p>_____</p>	<p>- 근거법령 변경내용 반영 상법에서 인정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한 공고방법 반영</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영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이사의 임기를 주총시 종결하는 것으로 변경
제43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43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근거법령 변경내용 반영
제44조의2 (주식의 소각) ①~② (생략) ③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대하여 .....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일 것	제44조의2 (주식의 소각)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대하여 .....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 근거법령 변경내용 반영
제45조의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6월 30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에 의한..... ② (생략)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제45조의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6월 30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② (현행과 동일)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 5. (생략) ④ (현행과 동일)	- 근거법령 변경내용 반영  - 상법상 용어로 변경
부 칙 본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영준	'56.12.31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전창원	'61.12.3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김태영	'56.12.23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영준 (사내이사)	(주)빙그레 영업담당 전무이사	- 고려대 대학원(경영학석사) - 전 ㈜빙그레 논산공장장 - 전 ㈜빙그레 기획담당 상무 - 현 ㈜빙그레 영업담당 전무	-
전창원 (사내이사)	(주)빙그레 관리담당 전무이사	- 연세대 대학원(경영학석사) - 전 ㈜빙그레 인재개발센터장 - 현 ㈜빙그레 관리담당 전무	-
김태영 (사내이사)	(주)빙그레 전략기획담당 상무이사	- 미국 오리건 과학기술대학원(금융공학 석사) - 현 ㈜빙그레 전략기획담당 상무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 남 현	'42.7.6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남현	(주)빙그레 상근감사	- 한양대학교 광산공학과 - 전 (주)한화유통 전무 - 전 (주)한화이글스 대표이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45기)	당 기(46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명( 2명 )	7명( 2명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500,000,000원	3,5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45기)	당 기(46기)
감사의 수	1명	1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00,000,000원	4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